

청원경찰 무기·탄약 [] 지급 제한 결정 통지서
[] 회수

제 호

대 상 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통 지 내 용	결정내용			
	무기·탄약 지급 제한 또는 회수 사유			

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의 무기·탄약 지급 제한 또는 회수 결정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기관의 장
○○시설·사업장

직인